핀란드 언론평의회

I. 설립 및 구성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1968 년 신문사의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라디오 · TV 사의 사장과 보도책임자(보도국장)가 설립한 자율기구로서 핀란드 언론평의회에는 정기간행물노조, 지방신문노조, 라디오 · TV 편집인노조, 핀란드기자노조, 핀란드방송사(Finnish Broadcasting Company Ltd.), 상업 TV 방송국(Commercial TV Ltd.)등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기적으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나 잡지사는 평의회의 회원에서 제외된다. 핀란드 언론평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언론평의회에 가입한 언론사가 정규적으로 내는 회비와 정부지원으로 조달하는데 그 비율은 50:50 이다.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1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한 사람이 의장이 된다. 이들의 임기는 3 년이다. 신문편집인협회가 4 명을 임명하고 발행인협회가 4 명, 그리고 나머지 4 명은 평의회가 일반공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선출하는데 언론사와 관계가 없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야 자격자가 될 수 있다.

II. 기능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매스미디어의 보도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항의나 불평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접수된 모든 사건을 무조건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이나 항의가 접수된다 해도 일차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를 하거나 심의에 부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자의로 기각할 수 있다. 기사내용에 대해 누구나가 항의하고 불평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핀란드 언론평의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신문의 독자나 방송의 시청자도 신문과 방송의 보도내용을 항의와 불평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다시 말해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매스 미디어의 보도에 대한 모든 불평과 항의를 접수하지만 문제가 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평의회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항의 및 불평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의회는 이를 기록하여 문서화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익명으로 제출된 항의와 불평은 접수하지 않는다.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항의자나 불평자가 원고가 되어 언론사를 상대를 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도 항의·불평서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기능이 다른 두 개의 기관(법원과 핀란드 언론평의회)이 같은 사건을 다루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언론평의회는 저널리즘의 윤리강령을 적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사건에 적용되는 규범의 기준(Standard of Norms)이 다르다는 것이다. 법원과 언론평의회가 적응하는 규범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제재력도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나 규범과 제재력이 서로 다른 두개의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이 마찰을 빚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핀란드 언론평의회가 매스 미디어의 보도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를 판가름할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이 법원도 특정기사가 저널리즘의 윤리에 저촉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릴 수 없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도 마찰을 빚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기사가 범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사는 저널리즘윤리에도 저촉되지만 저널리즘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기사라 해서 모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III. 절차 및 구속력

항의 및 불평서는 문제가 된 기사가 게재되거나 방송되고 난 다음 60 일 이내에 핀란드 언론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60 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활자매체를 상대로 항의 · 불평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된 기사를 동봉해야 한다. 그리고 접수된 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0 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법원과 같이 문제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한 언론사에 대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의회의 판정에 언론사가 따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자연인인 발행사나 편집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사를 게재하거나 방송한 언론사가 지도록 되어 있다.

IV. 특징

핀란드 언론평의회가 다른 나라의 평의회와 다른 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언론평의회는 법원의 전치기관이 아닌 독립적 기관으로 법원과 함께 그 원적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신문이나 방송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당한 언론규제나 탄압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부당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국민이 이런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그 시정을 요구해 올 때 그 항의와 불평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하고 이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다시 말해 핀란드 언론평의회는 매스 미디어의수용자와 함께 언론사의 正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자율기관이다. 언론이 부당하게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기관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는 한편 타율적 규제나 제도적으로 언론이 제기능(GoodJournalism)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하게 되면 이를 바로 잡아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평의회 의장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뽑아 위원회에 넘기는데 평의회 의장단은 핀란드 언론평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2 명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외국신문과 공문서나 관보는 평의회의 업무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수수료나 요금도 요구하지 않는다. 평의회의 위원은 모두 18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의 3 분의 2 는 언론사(발행인협회, 편집인협회, 방송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하고, 나머지 6 명중 3 사람은 법관 그리고 나머지 3 사람은 덕망이 있는 사회인사로 구성된다.

V. 언론평의회 정관

가. 평의회의 목적과 방침

제 1 조- 평의회의 설립목적은 불만호소 사안들에 대해 심의, 평결을 내리며, 결정된 평결문을 공표함으로써 저널리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기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분별하는 것에 있다.

제 2 조- 평의회는 신문, 지방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및 TV 에 공표된 기사 및 프로그램과 사진 그리고 취재과정에서의 기자의 행동에 대한 불만호소를 다루며, 언론자유 및 정보전달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모든 조치들에 대한 불만호소를 다룬다.

제 3 조- 평의회는 보도내용, 보도방식과 언론사와 기자의 행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표명된 의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4 조- 평의회는 사안에 대한 개별심의에 있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으나 국내 및 국외의 저널리즘 윤리강령에 나타난 저널리즘 원칙에 근거해서 그 결정을 내린다. 제 5 조-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은 저널리즘의 공정윤리 관행 규칙을 어긴 매체에 지체없이, 또 아무 수정없이 게재돼야 한다.

나. 평의회의 구성

제 6 조-평의회는 3 년 임기로 선출된 1 명의 의장과 12 명의 평 위원들로 구성되며 본 합의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추가로 위원들이 선출될 수 있다.

제 7 조- 평의원 중 4 명은 발행인들에 의해, 4 명은 기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평의회는 의장과 더불어 사회각계의 대표로서 4 명의 평의회 평위원을 선임한다. 이들 위원들은 언론사에 고용돼 있지 않거나 이같은 언론사내부에서 명예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1973 년 1 월 1 일). 사회각계의 대표 지명은 선임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이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1973 년 1 월 1 일)

제 8 조- 의장은 평위원이 합동으로 선임한다. 의장은 언론사 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그 같은 언론사에서 명예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의장의 선임절차는 본 정관에 뒤따르는 시행령 속에 자세하게 밝힌다. 의장의 선임은 전원일치여야 한다. 의장이 그의 임기중에 사임하면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새로운 의장이 3 년 임기로 선임돼야 한다.

제 9 조- 1973 년 1 월 1 일 부로 삭제

제 10 조- 사전 해명없이 연속 세 번 평의회 회의에 불참하는 평위원은 평의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는 별도의 결정을 요한다. 평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리고 본 정관 규정에 따라 3 년 임기로 새로운 위원이 선출돼야 한다.

제 11 조- 평의회는 위원들 중 해마다 2 명의 부의장을 호선한다. 평의회는 사회각계 대표위원들이 선출되어 평의회 위원직에 취임한 후 첫 회의에서 그들 중에서 부의장을 선임하며 그 후로는 해마다 이 절차가 되풀이 된다. 부의장은 재선임이 될 수 있다.

제 12 조- 평의회 평위원들 중 3 분의 1 은 본 정관에 따라 해마다 퇴임하며 퇴임하는 위원은 평위원으로 즉각 재지명되거나 재선출될 수 없다. 그러나 평의회 의장과 추가 선출위원들은 언제라도 재지명 또는 재선출될 수 있다. 평의회 의장의 임기는 선임과 동시에 시작되며 선임결과는 그에게 전달된다. 임기는 후임의장 선출과 동시에 끝난다.

제 13 조- 본정관은, 본정관 제 18 조에 언급돼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추가로 위원들을 지명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평의회는 본 정관 규정에 따라 평위원들이 지명하도록 한다. 이 같은 지명은 평의회 설립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뤄진다.

다. 평의회의 절차
제 15 조 - 대중매체에 공표된 것은 어떠한 내용이든 사무국장에게 고지함으로써 평의회에 불만호소가 접수될 수 있다. 이는 서면이나 구두 진술 후 사무국장이 준비한 진술서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1973 년 1 월 1 일)평의회는 매스 미디어에 공표된 것 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결 내릴 수 있다(1973 년 1 월 1 일).
제 16 조 - 평의회는 공표내용에 대한 익명의 불만호소들은 다루지 아니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표된 지 6 개월이 경과한 내용들도 다루지 아니한다. 평의회는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에서 다루었거나 아니면 이 같은 문제와 연관돼있는 보도내용들을 다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평의회는 심의한 사안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 17 조 - 평의회는 대중매체에 공표된 내용에 관한 사무국장의 진술서를 접수한 후 그 처리를 의장단에게 검토 결정토록 넘길 수 있다. 의장단은 평의회 의장, 2 명의 부의장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평의회는 평의회에 제기된 쟁점이 의장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뤄진 결정은 평의회의 다음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전체 평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제 18 조 - 평의회는 대중매체에 공표된 내용을 다룰 때 추가로 2 명의 위원들을 초빙해야 하며 그 중 1 명은 관련 매체의 발행인 중에서, 다른 한 명은 관련 기자여야 한다. 추가로 초빙된 위원은 평위원과 똑같은 투표권을 가진다. 평의회의장이 추가 위원들의 초빙을 결정 짓는다.
제 19 조 - 평의회에 제기된 안건들은 신속히 처리돼야 하며 사정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사안이 제기된 후 세번째 회의에서는 평결이 내려져야 한다.
제 20 조 - 평의회는 평결을 하기 전에 불만호소인, 언론사측, 전문가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평의회는 보고서들을 입수하고, 개별사안의 설명에 필요한 모든 기타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제 21 조 - 정족수는 의장과 부의장 중 1 명의출석과 평위원 6 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1973 년 1 월 1 일). 이같은 정족수 조건은 본 정관 제 7 조에서 제 10 조에 의거한 결정들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 평결이 전원일치로 이뤄질 수 없으면 표결에 붙여야 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요청이 있으면 표결은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찬반동수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23 조 - 평의회의 평결은 그 정당성이 충분해야 하며 의장이나 부의장 중 1 명과 사무국장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평의회의 결정은 평의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한다.

제 24 조 -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재심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 25 조 - 평의회 회의록은 평의회에서 공표한 내용대로 보관유지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출석자 명단, 심의된 문제, 제기된 주장, 유의사항, 그리고 최종결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제 26 조 - 평의회는 안건을 입안하고 승인한다. 평의회는 이 안건속에 사안의 발의와 취급, 적용될 절차, 사안(심의)의 마감, 사안의 공표, 평의회의 회의진행, 회의의 홍보, 그리고 평의회의 활동 등을 확정할 수 있다. 평의회는 하나의 안건을 확정짓거나 변경하게 되면 서면으로, 그리고 지체없이 관계당사자들에게 그 같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관계당사자들이 안건에 반대하거나 안건을 변경시키려면 서면으로 해야 하며 안건확정이나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이에 관해 평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라. 평의회의 행정
제 27 조 - 의장의 임무는 평의회 공문서에 소상하게 기록될 수 있다. 평의회는 의장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합의해야 한다.
제 28 조 - 평의회는 사무국과 2 명의 사무국 직원을 둔다. 그 중 1 명은 변호사이어야 한다. 그들은 평의회 위원이거나 부의장이어서는 아니된다(1973 년 1 월 1 일). 평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무국 직원들을 고용한다. 평의회는 또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령을 내려준다(1973 년 1 월 1 일). 평의회는 기타 직원들의 고용을 정한다.
제 29 조- 평의회의 재정은 관계단체들이 합의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평의회는 적기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준비한 후 승인받기 위해 관계단체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정관은 평의회 재정과 평의회의 예산관리 및 재정감사에 관해 보다 상세한 시행령을 제공해야 한다.
제 30 조- 평의회는 평의회에 제기된 사건과 이에 대한 결정, 그리고 기타 평의회 활동에 관해 매년 서면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활동 연도말 3 개월내에 관계단체들에 제출해야 한다. 활동연도는 이 정관이 발효하는 일자부터 산정된다.

마. 기타
제 31 조 - 본 정관에 서명한 단체들은 이 정관을 준수하고 그들 단체회원 및 고용자들로 하여금 평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하고, 정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이나 인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도록 한다.

VI. 언론윤리강령

서문
본 강령은 정보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에 그 기초를 둔다. 또한 공표되는 정보내용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올바르게 표출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포함한다. 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자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공표할 권리와 비평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 기자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책임성은 그의 활동이 공익성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기자들을 위한 직업윤리는

일반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국제적 협약 등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한다. 본 강령은 기자나 시민에게 부여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본 강령은 정보의 자유유통과 토론의 활성화를 꾀하지만 정보전달에 있어 원리원칙에 대한 책임도 강조한다. 그러나 본 강령이 정보전달의 실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본 강령은 기자들이 기자직 수행과정에서 행해지는 결정을 숙고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본 강령은 어느 언론사이건 간에 모든 기자들의 언론활동에 적용된다.

공정보도

1. 기자는 모름지기 진실되고 편견 없는 정보전달을 목표로 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거나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보도는 누락되어야 한다.
2. 기자는 정보원을 비판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들은 전에 공표된 바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 대한 보도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특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3. 정보를 접하는 시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해 주는 보도와 특정인의 주장을 반영하는 기사와 배경을 설명해 주는 허구적 설명문들에 대한 분별력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기사의 특성을 규정짓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해선 안된다.
4. 신문에 있어 제목, 사진설명문과 기타 설명문의 내용은 본문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5. 진실성에 대한 준수의무는 신문사진과 방송녹음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문사진과 방송녹음은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내용도 삭제 및 조합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왜곡돼도 안된다.

취재

6. 정보는 공개적이고도 올바른 방법으로 습득되어야 한다. 취재에 있어, 공익에 중요한 정보가 정상적인 수단으로 습득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예외를 두어야 한다.
7. 대중에게 공급되는 정보는, 수용자가 그 내용이 의도하는 바와 사용목적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8. 기밀정보를 공표하는 기자는 보호되어야 된다. 그 기자의 신원이나 가명은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되어선 안된다.
9. 인터뷰기사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선, 공표전에 피면담자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런 검토가 편집국외부에서 행해지더라도 기자의 권위를 잃어서는 안된다.

정정보도(correction) 및 반론(reply)

10. 부정확한 보도는 기자 스스로에 의해서나 관계당사자의 정정보도청구가 있을 경우 즉각정정되어야 한다.
11. 누구든지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정당하게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요청을 할 경우, 그에게 반론권(right of reply)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고정칼럼화 되어온 정치비평, 예술비평, 사설 등에 대해선 반론권이 반드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12. 정정보도 및 반론은 즉각 지체없이 공표되어야 한다. 원보도본문에 불만이 있는 시민은 쉽게 정정을 요구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13. 반론권이 행사되었지만 반론문의 내용이 게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방송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론문 작성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참고인의 위치에 서야 한다.
14. 보도문에 거명된 자가 심하게 비평 받았거나 그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 강령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개인의 권익보호

15. 특정 개인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명예는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에 있어, 사안의 본질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진부한 문제를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배경설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그의 부정적 측면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특정 개인의 인종, 국적, 출생지, 신앙 그리고 정치신념 등이 부당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잘못 표현돼서는 안된다.
16. 인물사진을 지면에 게재하거나 TV에 방영할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은 잘못 사용되거나 관계당사자에게 약점을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선 아니된다. 특히 범죄사건보도에 있어서 사고현장이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사진은 공표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한다.
17.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과 관계당사자에 해로운 사실은 본인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단, 공익에 현저히 준할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다.
18. 폭행, 체포, 투옥, 고소 및 항의시위 등에 관한 보도는 주의깊게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가능한 한 배경설명이 잘 부가되어야 한다.
19. 범죄사진에 연루된 사람의 신원을 추지케 할 수 있는 자료나 성명의 공표는 공익에 현저히 준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당사자의 지위와 행위의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판결 전에 공표돼선 안된다.
20. 유죄여부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뜻하는 내용의 보도는 금해야 하며, 사직당국의 판결을 예고하는 보도도 삼가야 한다. 폭행, 체포, 투옥, 고소 및 항의시위에 대해 일단 보도가 됐다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후보도는 삼가는 것이 좋은 보도태도이다.
21. 현재 보도되고 있는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오래 전의 범죄사건은 공표되지 말아야 한다. 시일이 오래 경과한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 사생활보호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다 즉, 사회적·역사적 중요성과 기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둔다.
22. 개인보호원칙은, 공공문서나 자료에 관계된 정보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야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보의 공공유용성이 항상 자유롭게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직업상의 지위

23.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내용을 결정짓는 선택행위는 언론학적인 배경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권위가 편집국외부에서라도 포기되어선 안된다.

24. 자유로운 정보전달을 방해하고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설득과 압력을 극복해내는 것이 기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25. 기자는 윤리강령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독립성에 먹칠을 할 수 있는 목전의 금전상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는 아니된다.
26. 기자는 자신의 양심과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있다.
27.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용할 때에도 윤리강령은 준수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재인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28. 원문 그대로의 광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설과 상업적 목적을 지향한 기사사이에서는 명확한 구분이 지어져야 한다.